

#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24년 5월 2일  
행정·재무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2024년 4월 15일

나. 제출자: 강서구청장

다. 회부일자: 2024년 4월 23일

라. 상정일자: 제30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

행정·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 상정·보류(2024. 4. 30.)

행정·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 상정·의결(2024. 5. 2.)

## 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: 행정지원과장 장주민)

### □ 제안이유

새롭게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행정기구  
개편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여 안정적인 인력 운영을 하고자 함

## □ 주요내용

가. 정원관리기관별·직급별 정원 조정 (안 제3조 관련 별표3)

○ 일반직 계: 1,742명(변동없음)

- 4급: 8명 ⇒ 9명(증 1)

- 5급: 76명 ⇒ 77명(증 1)

- 6급 이하: 1,656명 ⇒ 1,654명(감 2)

나. 한시기구 정원의 직급 및 운영시한(안 제5조 관련 별표4)

○ [신설] 균형발전추진단 (정원) 4급: 1명, (운영시한) 2027년 6월 30일

○ [기존] 신청사건립추진단 → [변경] 신청사건립추진과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1) 「지방자치법」 제125조

2)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8조, 제30조

나. 예산조치: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인건비 493,665천원이 예상됨

[도시균형발전추진단(4급)의 신설 3개 부서 신설 및 2개 부서 폐지]

다. 기타사항

1) 입법예고(2024. 3. 22. ~ 2024. 4. 1.) 결과: 의견없음

\* 입법예고 기간 중 일부 내용 수정으로 재입법예고(2024. 3. 29.~ 4. 1.)

2) 규제사전심사(기획예산과): 해당 없음

3) 부패영향평가(감사담당관): 원안 동의

4) 성별영향평가(가족정책과): 해당 없음

## 4. 전문위원 검토의견

(전문위원: 장석현)

### 가. 개정취지

본 개정안은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

### 나. 주요내용

#### 1) 총정원 및 직급별 정원 조정(안 제3조)

- 정원의 총수는 기존 1,742명과 동일하며, 4급을 8명에서 9명으로 1명 증원하고, 5급을 76명에서 77명으로 1명 증원하였으며, 6급이하를 1,656명에서 1,654명으로 2명 감원함

#### 2) 한시기구 정원의 직급 및 운영시한(안 제5조 관련 별표4)

- 균형발전추진단 4급 1명을 신설하고, 운영시한을 2027년 6월 30일까지로 정함. 기존 신청사건립추진단을 신청사건립추진과로 변경함

### 다. 종합 의견

-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은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4조에 따라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
- 같은 규정 제24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별 정원을 조정할 수 있으며, 균형 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,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해야 하고 그 책정 기준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

- 이번 개정안은 강서구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한 정원의 총 수와 지방공무원 종류별,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원의 총 수는 1,742명으로 기존과 동일하나, 4·5급을 각각 1명 증원하고, 6급 이하를 2명 감원하는 것임. 이와 함께 한시기구인 도시균형발전단의 4급 정원 1명을 신설하고 운영기한을 2027년 6월 30일까지로 정함
- 또한, 같은 규정 제3조(기구와 정원의 관리목표)에는 지방행정기관의 기능과 업무량이 변경될 경우, 그에 따라 지방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도 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
- 이에 따라, 본 개정안의 정원 조정 및 한시기구 직급 신설은 상위 규정에서 정한 내용에 따른 조례 개정으로,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 정비에 맞춰 함께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됨

## **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**

## **6. 토론요지: 생략**

## **7. 심사결과: 원안가결**

※ 붙임 관계법령 1부. 끝.

**□ 지방자치법**

제125조(행정기구와 공무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.

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.

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·자격·보수·복무·신분보장·징계·교육·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.

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.

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의 경우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,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.

**□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(대통령령 제34370호)**

제8조(한시기구의 설치운영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한시기구 설치시에는 기존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.

② 본청에 한시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기존의 보조기관과 담당관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의 중요성과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.

③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.

- ④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- ⑤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의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.

**제30조(정원의 규정)**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1. 집행기관의 정원(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)
2. 삭제
3.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
4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
5. 합의회행정기관의 정원

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[「지방전문경력관 규정」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(이하 “지방전문경력관”이라 한다)의 정원을 포함한다]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시·도의 5급 이하(시·군·구는 6급 이하)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

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(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「지방전문경력관 규정」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)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. 다만,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.

⑤ 「지방공무원법」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